

第248回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2 號(附錄) (臨時會)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4年7月7日(水)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장영달 위원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
외교부, 법원 공개결정에 불복 · 항소
치욕적인 외교사, 덮어둘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장영호 부장판사)는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문건 57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53명에게 한일협정 문건 중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 5개 문건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3월 4일 항소했다. 이유는 “협정 상대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양국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 피해자들이 대일 청구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는 양국 정부 간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여 일종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입장처럼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면 억울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자그마한 방조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은 그러한 정

부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의 법정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합의의 소상한 내용을 몰라 관련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면서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하 정신대, 위안부, 강제징용 등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줄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행정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제1항을 근거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연 일본 측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권협정의 합의 과정과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21일, 청구권 협정 합의 의사록을 근거로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일본 외무성의 비밀 외교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한일 수교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1964년 8월 7일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가 강제징용자 유족 구연석씨에게 보낸 서한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서한에서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가 회답에 제출한 ‘청구요강’에 따라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해당 개인과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배상 외에 개인에 대한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외교통상부는 이 건 항소를 포기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하는 것이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서나, 또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40여년 동안 철저히 배일에 가려진 우리의 치욕적인 외교사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건

해는 무엇인가?

○김문수 위원

빈발하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 정책원칙을 정립하라.

<최근 탈북자 관련 주요 사안>

1. 몽골 국경 정철훈(18) 총격 사망 사건

○사건 개요

지난 4월 2일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만저우리 인근에서 탈북자 24명이 몽골로 탈출을 시도하다 정철훈(19)씨가 중국의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17명이 붙잡혔으며 6명이 몽골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4월 14일 탈북자 지원단체 두리하나선교회에서는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중국군 기마부대가 나타났으며 탈북자들이 달아나자 총격을 가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국경을 넘는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5월 12일 몽골로 탈출한 탈북자 5명 국내 입국, 5월 17일 나머지 1명 국내 입국, 5월 18일 탈북자 17명과 탈북자 유해 1구(정철훈)가 화장 처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음.

6월 29일 두리하나선교회(대표 천기원 전도사, 011-212-2222)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정철훈(19) 총격사망 사건은 단순한 오발 사건이 아닌 무차별 총격으로 인한 사살사건이라는 증언을 공개함. 공개된 녹취록에서 숨진 정씨의 아버지 정기성(45)씨는 “몸싸움을 하거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반대(몽골)방향으로 뛰는데 뒤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철훈이가 5m앞에서 쓰러졌고 허리와 머리는 온통 피투성이였다.” “총알은 약 200발 정도 쏘았고 붙잡힌 상태에서 때리고 총칼로 계속 내리찍었다.”고 증언함.

또 다른 탈북자 이모(여, 44)씨는 녹취록에서 “20여 명쯤 되는 군인이 갑자기 뒤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며 “멈춰 섰는데도 가까이 와서 입산부 옆에다 총을 뽐뽐 쏘았다.” 그리고 “공안들이 자기네들끼리 중국말로 11탄창(330발) 쏘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함.

○정부의 대응

외교부는 정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중순 “중국 국경수비대가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수비대의 무기탈취를 시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잘못 발사된 총탄에 20세 가량의 남자 1명이 맞아 치료 도중 숨졌다고 중국당국이 알려왔다”고 밝힘.

또한 4월 사건 발생 직후 “당시 정씨의 아버지가 사건을 목격했으며 중국 국경수비대의 사살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힘.

6월 18일 시민단체 면담과정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정씨 총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7월 3일 현재 사망 경위에 대해 관계부처에 조사 의뢰 및 주중대사관을 통해 재차 중국 측에 사실 확인 요청(현재 회신 대기 중)

○질의 내용

당시 현장에 있었던 탈북자들의 증언과 녹취록을 통해 정철훈씨는 중국 국경 수비대의 무차별 총격에 의한 살상이라고 보는데, 외교부가 파악한 진상은 무엇인가?(6. 30 SBS 보도)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대표로부터 네 차례나 진상규명 요청을 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 자위적 흉기 사용 등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하여 국제 난민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행한 총기난사 사건은 아무런 사과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해야 할 것이다.

2. 중국 투먼수용소 단식농성 탈북자 7명 복송사건

○사건 개요

지난 2월 초 한국행을 위해 중국 남부 국경(광시성 난닝)을 넘어 베트남으로 가려던 박일만(38)씨, 강은희(25)씨 등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붙잡혔음.

이들은 난닝 현지 수용소에 있다가 3월 22일 지린성 투먼의 안산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안산 수용소에 도착한 직후부터 북한 송환을 거부하면서 약 20일간의 단식농성을 시작했음.(SBS 뉴스 3. 24 보도)

이들의 단식농성에는 북한으로 송환될 처지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의 동조로 최소한 수십 명이 단식농성과 집단행동을 하였음.

6월 3일 북한인권단체들은 “단식농성을 진행한 탈북자 7명이 5월 14일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감옥에 이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SBS 뉴스 6. 16 보도)

특히 중국 정부는 이들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간간단단 인적사항만을 통고하던 관행과는 달리 단식농성 주동자들의 탈북 및 억류 관련 문건과 탈북자 7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함께 보냈으며 이로 인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하였음.

○한국정부(외교부) 대응의 문제점

3월 25일 주중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박 씨 일행은 이미 언론 보도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교섭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제송환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음.(조선일보 인터넷 북한판 3월 25일자)

3월 3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중국 투먼 탈북자 수용소 집단 단식 농성과 관련하여 “탈북자 몇 사람이 서너 끼 단식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또한 정상기 외교부 아태국장은 “탈북자 서너 명이 한 끼에서 네 끼 단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주중대사관 직원 2명이 현장에 파견돼 사이드에서 입수한 정보”라고 설명했다.(조선일보 인터넷 북한판 3월 31일자)

6월 3일 외교통상부는 6월 3일 북한 인권단체의 탈북자 7명 강제 북송 발표에 대해 “중국 당국에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연합뉴스 6월 3일자)

6월 16일 외교통상부는 “중국 정부가 6월 14일 투먼 수용소에 있던 탈북자 7명이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자유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한으로 보낸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음.(조선일보 인터넷 북한판 6월 16일자)

6월 18일 탈북자 7인의 북송사태를 항의하는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정재남 동북아 2과장을 비롯한 외교부 담당자들은 “이번 경우처럼 재외공관 이외의 중국 영토에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실제로 한국행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동안 반 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외교채널을 통해 투먼 수용소 단식농성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면서 “중국 정부가 6월 4일 북송사실을 부인하고도 다시 6월 14일 북송 사실을 공식 통보해 온 것에 정부도 적지 않게 당황했고, 이미 중국 외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탈북자들의 북송사태로 정부의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했음. 외교

부 관계자는 북송된 7인의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리빈대사를 불러 북송된 7인의 탈북자의 신변을 계속 확인하도록 조치했고 외교부 정책실장이 직접 대사와 면담하여 후속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들의 신변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

○질의 내용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생사확인과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난 6월 18일 진행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대로 탈북자 7명의 신변확인 안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는지,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번 사태에서도 정부의 불성실한 대응이 문제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이들이 단식 농성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3일 뒤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투먼시에 영사를 파견했던 점, 최근 재외공관이 아닌 몽골 국경을 넘다가 총격을 받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전례가 있음에도 단식농성 탈북자 7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점, 탈북자 7명이 5월 14일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북한인권단체에서 6월 3일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음에도 중국 당국의 말만 믿고 아무런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교부의 사태파악 능력, 정보 보고 체계의 허술함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향후 재외공관 밖에서 발생한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가?

3.탈북자 윤웅주 씨 사건

○사건 개요

2월 27일 윤웅주(34) 씨는 탈북자 7명을 이끌고 독일학교에 들어가서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영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북한 주민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독일학교에서 퇴거 조치 당했음. 당시 윤씨는 북한주민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공민증이 없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북한 국가 등 북한 노래와 북한 용어를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대사관의 조사관으로부터 탈북자 판정을 받지 못했음.

윤씨는 공민증을 가지고 오면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탈북 7년 만에 북한 회령으로 입북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과 자신이 북에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4장을 가지고 5월 5일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으나, 재탈북 과정에서 검문에 걸릴 것을 우려해

맹원증을 버렸다고 하였다. 윤씨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1991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때 회령에서 김정숙 동상을 배경으로 친형,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일한 상황임.(사진 있음)

6월 1일 윤웅주(34) 씨는 탈북자 5명과 함께 또다시 중국 베이징 소재 독일학교에 진입했다가 ‘신분 미확인’을 이유로 독일대사관 측에 의해 쫓겨났음. 중국 당국과 외교부는 자발적 퇴거라고 함. 현재 중국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질의 내용

탈북자임을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선입국 후조사하여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주중 한국대사관은 탈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를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탈북자를 조사하는 영사들의 경우 비전문가이며 탈북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공민증 등 신분증이 있는가, 북한 주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아는가, 직장 등 신상정보” 등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탈북자들의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탈북기간이 오래 되었을 경우 노래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한 탈북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작업임.

실례로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탈북자를 조사하여 탈북자 여부를 판별하는 기관인 대성공사도 실수를 범하기도 함. 대성공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던 탈북자가 조선족으로 밝혀져 추방된 사례도 있었음.

따라서 한국대사관의 영사들은 탈북자 여부를 파악하기 애매한 사항의 경우 일단은 탈북자로 간주해서 국내로 입국시키고, 대사관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대성공사로 보내서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윤씨와 같은 애매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성공사는 조사과정에서 조선족으로 판별되면 중국으로 추방하면 됨.

탈북자 판정이 애매한 경우, 재중 한국대사관에서 최종 판정을 하지 말고 국내로 송환해서 대성공사의 전문가들이 판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함.

4.독일학교 진입 탈북자 강제송환 위기

○사건 개요

6월 30일 오후 6시께 베이징에 있는 독일학교에 탈북자 4명이 진입하고 1명은 공안에 체포되었으며, 진입한 4명은 7월 1일 베이징 주재 독일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주중 독일대사관은 탈북자들이 진입과정에서 흥기로 구내 외교관 가족들과 경비원을 위협한 점을 중시하여 이들의 신병을 중국 공안에 인계할 방침을 밝혔음.

탈북자들의 경우 중국 당국에 넘겨지면 폭행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이 흥기(탈) 소지 목적이 폭력행사가 아니라 한국 송환이었기 때문에 죄 값을 치른 후, 북한 송환이나 서울행 허용 여부는 독일-중국 간의 협상 여부에 달려 있음.

○질의 내용

이들의 흥기소지가 독일인을 위협할 목적이 아니라 진입과정에서 학교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중국 무장경찰이나 학교 내 보안 요원들이 진입을 막거나 학교 바깥으로 내쫓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는데 이들에 대한 선처를 위해 독일대사관과 중국 정부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이들이 중국 당국에 인계될 경우 중국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치르고 나서 국내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독일대사관을 상대로 적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지적 사항>

- 1)외교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의 부족
- 2)안일한 대응을 하다 실기하여 화를 자초
- 3)문제를 은폐하려는 태도
- 4)당당하지 못한 대중국 외교

<요구 사항>

대탈북자 정책의 방향 전환

- 1)선입국 후조사
- 2)선 구호조치 후 잔여문제 해결

○권영길 위원

1. 6자회담

1)한국은 6자회담에서 중재자역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6자회담의 의미에 대해 이수혁 차관보는 “남북한과 미국이 구체적 제안을 해,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토의가 본격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평가하듯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여 구체적

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중재자로서 한국 정부는 양자의 입장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안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이번 6자회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던 것이 고농축우라늄(HEU)의 존재여부와 북한이 요구한 평화적 핵 활동 보장입니다. 특히 HEU를 폐기대상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6자회담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북·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어떤 입장을 가져나갈 것입니까?

2. 이라크 파병

1)고 김선일 씨 납치·살해 이후 우리 정부의 이라크 교민안전 대책은 ‘철수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민들에 대한 테러위협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을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교민안전대책은 ‘철수령’입니까?

2)그러나 중동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적잖은 우리 기업 및 교민들은 오랜 기간동안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철수시키는 것보다는 교민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이들이 계속 정착하면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와 철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지난 6월 30일 잭 스트로(Jack Straw) 영국 외무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 병력을 추가하는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추가파병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장관은 영국의 입장변화와 한국의 입장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우리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누차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파병을 철회하거나 철군을 결정한 영국, 스페인, 불가리아 등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평화재건에 관심이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5)한미동맹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취지는 평화를 지향하는 방어동맹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은 전문에서 해외분쟁의 평화적 방식의 해결과 유엔 승인없는 무력행사 불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은 상기 두 가지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한국이 두 달 만에 동참한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나라의 방어동맹이 침략동맹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6)정부와 미국 정부는 고 김선일 씨 피랍사실을 20여 일이나 지난 6월 21일에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라크 내 무장저항세력의 동태 파악은 물론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보력과 대응력으로 어떻게 우리의 젊은이들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공언하십니까?

3. 주한미군 이전·재배치

1)얼마 전(5월 25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세계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정부가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2)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ex. 지역안정군화에 대한 NSC의 반발) 그러한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로 출동할 경우, 반드시 한국과 사전조정, 합의하에 움직이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현재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주한미군은 할 축소가 아니라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GPR)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맞습니까?

4)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해외주둔 군사시설 이전비용은 시설이전을 원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는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한국이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통상문제

1)투자에 대한 촉진과 상호보장이라는 목적으로 1998년 6월부터 한미 양국 간에 진행되었던 투자협정체결, 즉 BIT를 위한 양국 간 교섭이 중단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5월 맞지요?

2)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비공식적인 실무단 수준의 교섭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까?

3)만약 그렇다면 실무교섭 과정에서 다루어진 사안들은 무엇이며, 협상에서 국익 차원의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4)또 그렇지 않다면 BIT교섭의 중단은 스크린쿼터,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확대(49%→51%), 저작권 소급보호문제 등과 같은 여러 이유들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그 중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스크린쿼터 축소사안이 맞습니까?

5)그런데 지난 달 11일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스크린쿼터 축소조정 및 변화검토’ 발언을 기억할 것입니다.(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과의 면담)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 오찬에서 17차 한미재계회의차 모인 미국 측 인사들에게 ‘규제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적극 투자해 달라’는 부탁성 발언과 함께, 스크린쿼터 축소를 정부의 현안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국정브리핑 인터넷판, 2004년 7월 2일) BIT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스크린쿼터 축소사안이 문화관광부장관과 대통령에 의해 언급되었다는 것은, 중단되었던 한미 BIT협상이 조만간 공식적으로 재개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 6월 24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졸릭 대표가 워싱턴에서 김재철 무역협회장에게 ‘한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과 지난 2일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 측이 BIT를 한미 FTA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지정한 사실들은 BIT가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통부가 BIT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안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관례상 이 자리에서도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6)없다면 현재의 언론보도나 시민단체들의 성명 내용과는 달리, BIT는 더 이상의 한미 간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미국 측의 입장과는 달리 이후 진행될 한미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미국의 거대한 초국적 투자자본에게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서(미국의 BIT표준안 7조) 국내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은 물론 방송, 교육, 의료, 농업 및 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의 사유화로 인한 사회적 공공영역까지 미국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사회권 등 국민들의 생존권조차 위협할지도 모를 BIT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진행된다면, 협상 타결 이후 예상되는 국민들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의 구분도 분명치 않고, 외국투자자본에 내국민대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보호적 규제도 해외투자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한미 간 BIT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국토와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BIT를 체결하는 것이 과연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불평등한 한미투자협상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협상은 안보·평화협상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정부가 BIT를 비롯한 투자·통상관련 국제협상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 말한다면 정부는 투자·통상협상 과정의 제도적인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감증을 토대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특히 문화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자산은 모든 국제통상협상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스크린쿼터 축소논의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 쌀개방 협상

1)1994년 체결된 UR 농업협정문에 근거하여,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가 한 달여 넘게 직무유기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쌀 수출국 9개국(미국 중국 호주 등)과 2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먼저, 올해 안에 쌀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어 한국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UR협정문에는 2005년부터 자동적으로 쌀을 관세화 해야만 할 법적 의무를 부담시킨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3)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쌀 수출국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 사이의 의견 대립이나 또는 그들의 일방주의적 요구로 인해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는다면 협상결렬의 책임은 수출국들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국들이 한국을 WTO에 제소할 수도 없다(제소 내용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본 위원은 그런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런 국제 통상의 선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통상전문가들이 국내외 다수인 것으로 아는데 국가적 현안인 만큼 통외통위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화 위원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6자회담

지난달 베이징에서 북핵 관련 3차 6자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상이란든가 반대급부가 제시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전반적인 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갖겠다는 ‘리비아식 핵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북한에 대해 불가침을 보장한다든지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또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북미 국교정상화까지 가능하다는 해법을 제시해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리비아 식’으로는 굴복하지 않

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리비아식 핵 폐기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취했습니까?

또한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동의한다고 해도 북한이 말한 핵 동결의 범위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HEU 프로그램 보유를 부인하고 있는 북한은 ‘증거를 내 놓으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 중이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 활동을 동결했을 경우 200만kW의 전력에 상응하는 중유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동안 고수하면서 1994년 빌 클린턴 정권 때의 제네바 합의를 비판해 왔습니다.

만약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을 약속한다면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대부분의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은 6자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의문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년간 부시 정부의 태도 변화에 모든 것을 걸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과는 없고 한국의 발언권은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협상의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귀중한 시간을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열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하지 않도록 동결국면을 조기에 조성하고 이러한 협상분위기에 북한을 최종적인 핵 폐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위급 회담을 가지는 것도 협의해 보고,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경제가 새롭

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측에서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대결이 민족의 사회적 이해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책 조정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해 대북정책을 마련하게 한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우리도 이를 위해 통일·외교·안보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최병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풍운호 사건 관련 우리 국민이 크게 손해를 입었는데, 일본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하지 않는가?

○5. 24 사건 발생 이후 외교경로 및 한일 수산당국 간 협의에서 일측의 과잉 단속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음. 일측은 선장이 상처 입은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풍운호가 위반조업 후 누차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풍운호 선장의 상처에 대한 피해 보상요구 문제는 위반조업에 대한 벌칙금 등과도 연계하여 해당자 본인이 제기할 사항이라고 보며, 필요시 이는 양국 수산당국 간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함.

중국 내 아국인 구금자 수

○총 140명

-사형 집행유예 : 7명

-무기징역 : 8명

-10년 이상 : 26명

-10년 미만 및 기타(미결) : 89명

(김문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대이라크 홍보실적

○우리 정부는 그간 우리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 이라크인들의 민생안정 및 조기 평화 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 인도적 목적에 있음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각국에 다양한 계기를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해 옴.

지난 2~4월에 걸쳐 중동지역 총 16개국에 외교장관을 포함하는 고위급 대통령특사를 파견, 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 취지에 대한 중동 각국의 이해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대통령 특사 파견(16개국 대상, 6개조)

외교부장관 :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2.18~23)

국방부장관 : 오만, UAE, 쿠웨이트(2.27~3.4)

건교부장관 : 바레인, 카타르, 이란(2.22~3.3)

정통부장관 : 예멘, 레바논, 튀니지(3.2~3.11)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3.8~3.18)

행자부장관 : 수단(4.23~25)

아울러, 파병지역 주요 인사 초청, 이라크 외교관 초청 연수 등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파병전 이라크 내 친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이라크 내 아랍어 유력 일간지 Az Zaman지를 비롯, Al Jazeera 방송, Al Ahram지, Al Arabya 방송 등 아랍권 언론 주요 인사들을 초청, 아국의 이라크 파병 취지를 아랍권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였음.

○우리의 서희·제마 부대가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재건 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현지 주민 및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부각, 앞으로도 아랍권 언론 매체를 활용, 우리의 인도적 차원의 이라크 파병 취지를 이라크 및 아랍권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임.

이러한 노력은 이라크에의 추가 파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라크 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앴으로써, 금번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앞으로 제대로 된 협상의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귀중한 시간을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열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1차 및 2차 6자회담을 거치면서 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3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의 동결 제안에 대한 대답으로 동결 대 상응조치 제안을 내놓는 등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3차 회담에서는 미국이 구체적인 안을 내 놓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미측 안과 큰 틀에서는 같으나 세부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독자적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6자회담 참가국들, 특히 북한에 대해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등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고 봄.

○정부는 앞으로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들의 구체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

필요하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핵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위급 회담을 가지는 것도 협의해 보고,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경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측에서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협력이 더욱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정부는 그때에 대비해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즉,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확충과 산업생산능력의 향상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또한 3차 6자회담에서 전체회의와 남북 양자접촉 기회 등을 통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북한 경제도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하였음.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거나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의미 있고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최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나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장영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 공개 요청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지난 2004. 2. 13 서울 행정법원이 내린 일부 공개 판결에 대해 원고 및 피고(외교통상부) 모두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

○외교통상부가 항소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공개토록 결정된 공개 대상 문서철 5권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등지에서 진행 중인 일제시대 피해 배상 소송에서는 원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반하여, 대외관계에서 아직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은 면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또한 외교통상부로서는 외교문서를 상대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대외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임.

○아울러 일본 외무성의 비밀 외교문서가 처음 공개되었다는 6월 21일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3년여 전인 지난 2000. 12. 20 일본의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공개한 것임.

보도에 나온 문서는 한일 협정 타결 전인 1963년 민원인의 일제 시대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한 민원 회신으로 한일 양측 간 합의를 반영하는 비밀외교문서라고 볼 수 없고 민원회신 당시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일본 외무성은 30년을 경과한 외교 기록을 심사 후 정보공개법에 따라 연례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국가 안전의 위해가 있거나 타국 혹은 국제기구와의 신뢰 관계 손상이 우려될 때는 30년이 경과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일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한일 청구권 및 이와 관련한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에 최종 타결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간 국내 민원인들에게 분명하게 회신해 오고 있음.

(권영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미 BIT 교섭 중단 시점 이후 교섭 추진 여부

○1998년 6월부터 시작된 한미 BIT 교섭이 2000년 5월부터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교섭(실무차원의 교섭 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미 BIT 교섭 중단 사유

○BIT 교섭 중단은 스크린쿼터,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 저작권 소급 보호 등과 같은 여러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중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스크린쿼터 문제였음.

한미 BIT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 BIT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임.

○다만 현재 문화관광부가 영화업계와 스크린쿼터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먼저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 한미 BIT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스크린쿼터 문제 이외에도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쟁점들이 일괄 처리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BIT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봄.

BIT가 한미 FTA협상의 전제조건인지?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한미 BIT 협상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6년 이상 미결 상태로 남겨둔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개방·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쳐질 소지가 있음.

○BIT가 체결되면 한미 FTA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나, BIT가 한미 FTA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FTA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BIT 체결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

한미 BIT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

○일부에서 한미 투자협정 문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과장된 것이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협상과정에서 이미 타결되었음.

○또한 지난 98~99년 협상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분야에 대해서는 유보를 통하여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가 되어 있음.

한미 투자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 교육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내외국민 차별

없이 시행할 수 있음.

○정부는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한미 투자협정 교섭이 재개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2000년 교섭 중단 당시의 미결 쟁점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재검토할 예정임.

한미 BIT 협상 과정의 투명성

○한미 BIT 협상과 관련한 모든 논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

지금까지 BIT 협상과 관련하여 비밀리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음.

중재자로서 한국 정부의 향후 6자회담에 대한 복안은?

○우리 정부는 6자회담에서 한·미·일과의 긴밀한 공조와 중·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회담 과정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촉진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음.

○우리 정부는 3차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9월 말 이전 4차 본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에 관해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최근 ARF회의(6. 30~7. 2) 기간 중 개최된 남북, 한미, 한중,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남북한 방문(7. 3~5),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7. 9) 계기를 활용, 3차 회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앞으로 초기단계 조치들의 구체 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설득이 핵심적 요소이므로 앞으로 남북 간 대화 기회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에도 힘을 쏟을 예정임.

고농축 우라늄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은 금번 3차 회담에서도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우리는 북한이 농축우라늄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북한이 동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고 동결·폐기에 합의

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임.

○북한이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하고 제네바 합의에 의해 동결된 핵시설을 재가동하였으며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평화적 핵활동 권리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북한은 우선 핵문제를 국제적 검증하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결하고 NPT에 복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우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고 김선일씨 납치·살해 이후 우리 정부의 이라크 교민안전 대책은 ‘철수령’이라고 알고 있음. 교민들에 대한 테러위협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을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교민안전대책은 ‘철수령’인가?

※영사과에서 답변자료 작성

교민안전 확보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와 철군이라고 보는데?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파병철회와 철군이 궁극적인 해답이 아님. 아울러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테러집단의 위협에 따라 정부가 내린 결정을 재검토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추가파병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재건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홍보하여 나가고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지난 6. 30 잭 스트로(Jack Straw) 영국 외무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 병력을 추가하는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이로써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추가파병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국가가 되었음. 영국의 입장변화와 한국의 입장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국은 현재 9000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수행 중에 있음. 영국이 이라크에 추가적으로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이라크에 파병 중인 병력의 규모가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음.

○영국이 이라크 내 병력수요에 따라 추가파병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추가파병을 약속한 적은 없음. 우리는 이라크 국민과

국제사회에 추가파병을 약속하였음.

우리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누차 말해왔음. 그렇다면 추가파병을 철회하거나 철군을 결정한 영국, 스페인, 불가리아 등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평화재건에 관심이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는지?

○각국마다 자신의 국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에 대해 타국이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스페인, 불가리아 등은 스스로의 공약에 따라 파병을 했고 안정화 작전을 수행했음.

○영국은 현재 9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여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이라크에 추가적으로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이라크에 파병 중인 병력의 규모가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음.

한미동맹의 유일한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음. 그 외에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이 보조적인 법적 체제를 이루고 있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취지는 평화를 지향하는 방위동맹임. 상호방위조약은 전문에서 해외분쟁의 평화적 방식의 해결과 유엔 승인 없는 무력행사 불가를 천명하고 있음.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은 상기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였음. 이러한 침략전쟁에 한국이 두 달 만에 동참한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추가파병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1511호 및 1546호) 요청에 부응하고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정부와 미국 정부는 고 김선일 씨 피랍사실을 20여일이나 지난 6. 21일에서야 알았다고 했음. 이는 이라크 내 무장저항 세력의 동태파악은 물론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명백한 반증임. 이 정도 수준의 정보력과 대응력으로 어떻게 추가파병을 하겠다고 공언하는지?

○이라크 내 무장세력의 동태를 모두 파악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무장저항 세력이라는 집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임. 현실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5. 25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세계 어느 곳이나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정부가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미국 정부 측은 동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캠벨 사령관도 보도 자료를 통해 “본인의 발언은 가정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음.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이 한반도 전쟁역지라는 데에 양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한 바 없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로 출동할 경우, 반드시 한국과 사전조정, 합의하에 움직이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주한미군의 이동에 대한 사전협의 문제는 정부 내 검토를 거쳐 미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 주둔미군재배치(GPR) 전략에 따른 것 아닌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한 적응, 우리 국토의 효율적 개발, 주한미군과 주민들과의 마찰가능성 축소로 보다 안정적인 주둔환경 제공, 효율적 기지체계 확보를 통한 전쟁역지능력 강화라는 우리 측의 필요성도 동시에 고려된 것임.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 재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또는 통·폐합될 총 35개 기지 중 미측의 요청에 따라 이전하게 되는 기지는 25개로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게 됨. 용산기지는 한국 측이 90년도부터 이전을 요구해온 기지로 우리 측이 이전을 요구한 10개 기지 중 하나에 해당함.

○따라서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하되 비용부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의 협의를 추진하여 온 것임.

한·칠레 FTA 관련 수출증대 효과 등 상세자료

○지난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이제 불과 3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으므로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나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FTA 발효 이후 2개월간(2004년 4월~5월)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동기대비 수출이 28%, 수입이 95% 증가하였음.

-수출 : 8600만 불→1억 1000만 불, 수입 : 1억 7100만 불→3억 3400만 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수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큰폭으로 나타난 것은 칠레 수입량의 절대 증가라기보다도 구리 등 우리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부자재의 국제가격이 폭등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임.

-대칠레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구리의 국제시세가 65.8% 급등(작년 5월 74.8cent/pound→금년 5월 124cent/pound)

-또한 포도주 수입의 증가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의 효과(2004년 포도주 관세율 : 12.5%)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포도주 선호도 증대에 따라 값싸고 질 좋은 칠레산 포도주를 선호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칠레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 수입량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FTA 발효로 인한 관세 혜택을 기다린 수입 집중 현상과 포도, 키위 등 일부 농산물의 계절 편향 현상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5월 이후 수입은 안정적인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4월의 경우 FTA 발효 이전 3개월 보다 27%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5월 들어서는 4월 대비 2% 증가에 그침. 특히 5월 들어 계절관세 혜택이 사라진 포도의 경우 전월 대비 31%, 키위는 42% 수입이 각각 감소하였음.

○참고로 주요 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자동차가 34%(27.6백만 불→37.1백만 불), 휴대폰이 184%(3.9백만 불→11.1백만 불), 컬러TV가 59%(1.2백만 불→1.95백만 불) 증가하는 등 기계 및 전자·전기 제품 등을 중심으로 뚜

러한 신장세를 보임.

수입의 경우, 구리 등 비금속제품이 155% (72.6백만 불→185백만 불), 금속광물이 51%(55.3백만 불→83.4백만 불), 포도주가 137%(0.5백만 불→1.2백만 불) 증가하였음. 반면 최대 농산물

수입품목인 포도는 같은 기간 중 2.2%(8.2 1백만 불→8.4백만 불) 증가에 그쳤고, 홍어는 오히려 수입이 9%(1.7백만 불→1.6백만 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 발효이후 수출입 동향>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불)

구 분	전년 동기 대비			FTA 전·후 평균 대비		
	2003년 4~5월 합계	2004년 4~5월 합계	증감률 (%)	2004년 1~3월 평균	2004년 4~5월 평균	증감률(%)
수 출	86	110	28%	45	55	22%
수 입	171	334	95%	154	167	8%
무역수지	△85	△224	△139	△109	△112	△3

※4월 무역수지(수출 : 61, 수입 : 193) △132, 5월 무역수지(수출 : 49, 수입 : 141) △92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천 불)

주요 수출품목	2003년 4~5월 수출량	2004년 4~5월 수출량	증감률(%)
자동차	27,659	37,109	34%
휴대폰	3,894	11,072	184%
냉장고	554	998	80%
컬러TV	1,232	1,954	59%
캠코더	1,049	1,304	24%
세탁기	3,930	4,156	5.8%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천 불)

주요 수입품목	2003년 4~5월 수출량	2004년 4~5월 수출량	증감률(%)
비철금속(구리 등)	72,631	185,048	155%
금속광물	55,293	83,360	51%
돼지고기	4,405	7,605	73%
포도주	504	1,193	137%
홍 어	1,767	1,605	-9%
포 도	8,225	8,408	2.2%

○1994년 회원국간 타결된 WTO농업협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부속서 5(Annex 5)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치를 관세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쌀의 경우, 상기 부속서 5에 따라 10년간(1995~2004) 관세화를 유예받고 있으므로 이번 협상을 통해 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상기 농업협정 원칙 및 부속서 5의 제10항에 따

라 관세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협상과 관련하여,
○ 동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UR협정문에 자동관세화 의무 부담 조항이 있는지?
○ 연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 책임이 수출국에 있으므로 상대국들이 협상 실패를 이유로 WTO에 제소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 그리고 제소할 수 있다면 국제통상 선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음.

○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되는 WTO협정상의 관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 관계국은 WTO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WTO협정상의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로 관세화 의무 부담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WTO사무국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음.

○ 95년 WTO출범 이후, 관세화 예외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하고 있는 협상이므로 선례가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김선일 씨 사건 관련, 김천호 사장이 대사관을 방문했던 사유

○ 김선일이 가나무역과 연락이 두절된 5. 31부터 알자지라 방송이 방영된 6. 20까지 김천호 사장은 주이라크대사관에 총 네 차례 걸쳐 방문하였으며, 동 방문의 주요 목적은 팔루자 지역 담요 공급 지원 문제와 대사관 내 조립식 사무실 설치에 관한 협의였음.

○ 주이라크대사관은 팔루자 지역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담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팔루자 지역의 영향력 있는 성직자를 통해 담요 5000장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며 가급적 국산 담요를 빨리 구입하기 위해서 현지 조달관계에 경험이 있는 가나무역 측과 그동안 협의해 왔음.

○ 동 방문 계기, 주 이라크대사는 가나무역이 아래 사유로 테러 목표가 될 수 있음을 감안,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가나무역 직원들이 기독교인 점

-미군 군납업무 수행

-현지 직원들의 잦은 해고로 원성을 살 수 있는 가능성

-미군 군납계약에 탈락한 이라크 업체들이 가나무역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우려

(신계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김천호, 김선일 등 가나무역과 관련된 종교관련 사항

○ 가나무역은 한국인 직원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가나선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질 만큼 신앙적인 결속력이 강함. 김천호 사장 자신도 신앙심이 강하고 수익의 5%를 선교 현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